

# 도시가스 공급 규정

## 사용계약 및 공사, 검사

“  
최근 “난방 시공업”과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99년 1월1일자로 전문이 개정된  
내용을 회원들이 알기쉽게 연재코자한다.  
”

###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 제5조(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시장이 확장 공고하는 도시가스공급관공사계획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공급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회사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가스사용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또는 지역관리소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등급을 결정한다.

#### 제7조(계약을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
- ②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사 착수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한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가스신청자는 시설분담금을 회사와 협의하여 6개 원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승낙의 의무)

- ① 회사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가능여부, 개략공사비 및 공급예정일 등을 명시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굴착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협의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인근배관에서 새로이 공급관 연장이 100m당 25가구이상(계량기 설치기준) 동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으며, 100m당 25가구이상 동시 신청한 지역이라도 도로굴착제한지역이거나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로 인하여 공급관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을 임의로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 사용자는 문서 또는 전화로 회사 또는 지역관리소에 가스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 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가스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신청이 없을 때에는 전 가스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변경된 가스 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회사와의 협의없이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스안전사고 위험요인 유발시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최고전년동월 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최고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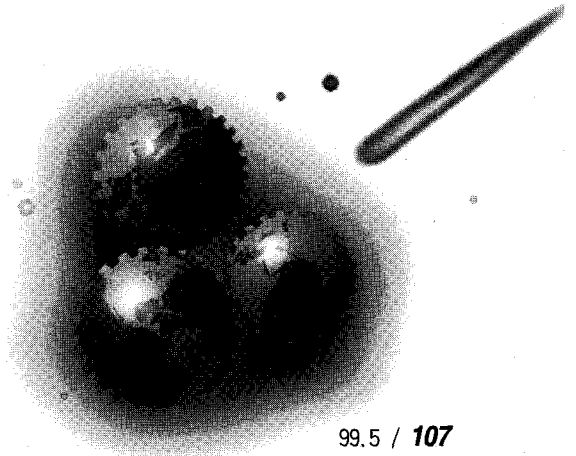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 제9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 최고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최고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최고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단, 전년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한 사용료를 월사용료로 하여 적용

#### 제10조(해 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에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 또는 지역관리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에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주택용 가스시설의 신설·개조·보수 등의 공사는 회사가 수탁공사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의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시공자는 회사와 공급관의 유무, 용량 및 도로굴착 제한 여부등 공급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탁공사시에는 굴착제한 지장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지연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수탁공사에 관한 지침은 별표7로 정한다.

⑥ 회사는 가스사용자는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소유별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소유의 공

급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가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에도 회사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 할 수 있다.

### 제3장 공사 및 검사

#### 제12조(공사의 설계 및 견적)

① 회사가 수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설계와 시공견적을 행하여 공사비의 명세를 통지하고, 수요자와 협의하여 공사에정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설치시 향후 수요증가 및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막다른 골목등을 제외하고는 최저관경을 80mm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사시행)

① 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영업용, 업무용 포함)에 대한 공사는 회사 또는 수요자가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선정한 시공자가 시행할 때에는 회사와 공급계획 등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위해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시공함에 있어 공사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하여야 함은 물론,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8의 “도시가스배관 완벽시공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주택용 가스시설의 신설·개조·보수 등의 공사는 회사가 수탁공사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시공자는 회사와 공급관의 유무, 용량 및 도로굴착 제한 여부등 공급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수탁공사시에는 굴착제한 지장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지연할 수 없다.
- ⑤ 제3항의 수탁공사에 관한 지침은 별표7로 정한다.
- ⑥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소유의 공급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가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회사가 타인토지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자체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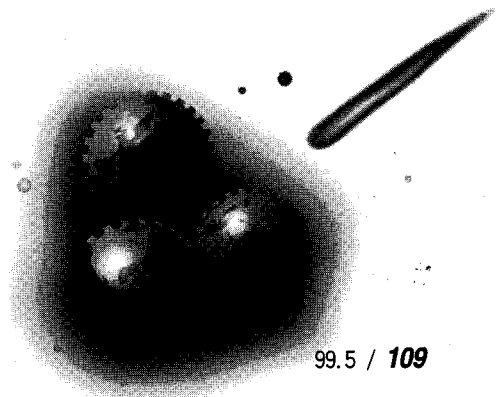
- 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공사를 완공한 시공자(가스보일러시공자를 포함한다)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시공 기록 및 배관도면을 작성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공자는 제1항의 자체검사 실시 3

일전에 회사로 자체검사 입회를 요청하여 자체검사시 회사가 입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자체검사를 요청받은 회사는 기한내 자체검사 입회를 실시하고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할 시 즉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가스연소기등 관말연결시공 완료후 입회요구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요청후 1일 이내에 자체검사입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도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되, 별표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



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  $\pm 3\%$ 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관리소)

- ① 회사는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4항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지역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4항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지역관리소운영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민원처리 기피등 제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시장의 제재권고를 받은 회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지역관리소는 민원접수대장을 비치 및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모든 민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연소기등의 가스공급)

가스보일러를 포함한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한다)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 또는 지역관리소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공급요청일에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사비)

- ① 회사나 시공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과 정부공사예정가격작성요령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가스시설 공사비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

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본관·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④ 회사나 시공자는 2인이상의 수요자로부터 동일대지 건물내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1인의 신청으로 하여 이 규정에 의한 공사비를 적용한다.
- ⑤ 회사나 시공자는 수요자가 공사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이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가스공급을 위한 공사중 수요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공동주택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가스누설등의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사비 납부)

수탁공사에 의한 공사비납부는 별표7에 의하고, 수요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되, 시설분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 제20조(공사비 정산)

- ① 회사 또는 시공자가 공사 착수전에 수요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는 시설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준공 후 정산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공사비 정산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 또는 시공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정산내역을 재검토하여 하자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일은 우체국의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 전달시에는 수요자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 제21조(검 침)

①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은 회사가 정한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회사가 실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월 검침시의 사용료 산정은 검침된 양의 2분의 1을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 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 제22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입방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숫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 제23조(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월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

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전년 동일기간의 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다음 검침시에 정산한다.

④ 회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에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한다.

1. 속동의 경우 
$$V = \frac{V_1 \times (100 - A)}{100}$$

2. 자동의 경우 
$$V = \frac{V_1 \times (100 + A)}{100}$$

V=제21조 제4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V<sub>1</sub>=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A=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속동율 또는 자동율(%)

⑤ 주택용 공급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한다.

$$V = \frac{V_1 \times (10332 + P)}{10332 + 100}$$

V=제21조 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P=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mmAq)

V<sub>1</sub>=가스계량기의 검침량(㎥)

